

# 언론과 법



## 국내동향

### ‘불공정 재판’ 보도 명예훼손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정 모 부장판사가 조선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하여 보도할 때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주의 깊게 살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작성하여야 함에도 제보 내용에만 몰입한 나머지 정 판사가 감정신칭 철회를 요구한 배경이나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내용 중 “정 판사가 ‘막말’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퇴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정 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조선일보가 “서울 지역의 한 법원에서 빛어진 ‘불공정’ 재판 시비 때문에 변호사 단체들이 법관평가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라고 보도하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2억 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지울 스님 ‘천성산 단식’ 보도 관련 10원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천성산 공사를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지울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보도 내용의 일부가 과장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소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기사 중 일부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신문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지울 스

님의 청구에 따라 위자료는 10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공사손실액은 고속철도 개통 지연 등에 따른 수치일 뿐”이며 “이는 원호터널 공사가 중단된 6개월 동안 시공업체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이 145억 원이라는 인정 사실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칼럼과 기사 등을 통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를 근거로 지울 스님의 단식으로 인한 천성산 공사 중단으로 2조 5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수차례 보도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지울 스님은 시공업체 등이 입은 직접손실액은 145억 원에 불과하다며 정정보도청구와 함께 상징적인 의미로 1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 공익적 목적 피해자 실명공개는 정당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진다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이 모 씨가 MBC 「PD수첩」이 실명으로 횡령 의혹을 다루자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공적 중요성을 가진 피의

자의 실명 공개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문제의 사태에 관하여 최

고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이미 수사기관에 구속되었던 전임 이사장인 원고에 대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과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 할 때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한센병 환자들의 폐쇄적인 정착촌에서 사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회병리적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밝히고 이에 연루된 원고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사회·경

제·문화적 측면에서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명보도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례로서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법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경우 △피의자가 갖는 공적 인물로서의 특성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일반 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경우를 제시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2001년 ‘소록도의 외침,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한센병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만든 H상조회가 사실상 수억 원의 자금횡령장구로 사용됐고,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횡령 관련자들이 음독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내용을 두 차례 방송했다.

이 씨는 이 프로그램이 자신의 실명이 적힌 피켓을 든 주민들의 시위 장면을 방영하고,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화면을 내보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문화방송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 ‘경쟁 병원 악성댓글’ 실형선고

경쟁 관계에 있는 병원에 대해 댓글을 단 모 병원 원무과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는 “피고가 자신의 병원 직원 등의 명의로 여러 개의 ID를 도용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다른 병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인터넷 카페는 산모들을 위한 전용공간이므로 이곳에 게재된 댓글은 일반적인 댓글과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고, 따라서 카페 이용자들은 이곳에 올라온 피고의 거짓정보를 자기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무과장으로 있

는 정 모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임신부들의 전용 카페에 지난 1월부터 한 달 동안 80여 차례에 걸쳐 인근 경쟁 병원 두 곳에 대한 질문에 악성 댓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법원이 통상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해왔다.

### ‘펜션이용 비판적 후기’는 주관적 의견 피력, 무죄선고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는 자신의 이웃이 운영하는 펜션을 비방하는 글을 펜션 홈페이지에 게재해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S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용후기로 느껴질

수 있도록 ‘다녀온 사람’이라는 작성자 명의를 사용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후지다’거나 ‘돈이 아깝다’ 등의 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표현들은 개인의 성향이나 기호에 따른 주관적 의견

이나 가치판단에 해당할 뿐,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 영국, 기업 명예훼손 사건 대폭 증가

최근 명예훼손 사건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전문 출판사 Sweet and Maxwell의 법률 자문관은 기업이 제기한 명예훼손이 세 배나 늘어남에 따라 전체 명예훼손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월 31일까지 보고된 명예훼손 사건은 78건으로 작년 59건에 비해서 32%나 증가했으며, 이에 대해 Sweet and Maxwell은 기업 명예훼손 사건의 대폭적인 증가는 국제적인 신용위기에 따른 재정압박 속에서 기업이 자신들의 평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 자료들은 Sweet and Maxwell의 'Lawtel & Westlaw UK'의 온라인 법률정보 서비스를 통해 분석된 수치이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명예훼손 사건 중 언론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것

은 5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다른 회사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었다.

Sweet and Maxwell은 기업 명예훼손 사건의 증가 추세와 관련, 기업들이 자신의 회사가 파산될 수도 있다는 주장으로부터 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치 유행처럼 법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펌 Reynolds Porter Chamberlain의 미디어 담당자인 Jaron Lewis 변호사도 기업 명예훼손 사건의 증가는 회사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전략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업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회사의 전략적인 PR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며 "언론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소송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는 없고,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나 통신청(Ofcom)의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명 인사들과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은 18건으로, 작년 19건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수치는 전체 명예훼손 사건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Lewis 변호사는 최근 유명인사들의 소송 경향과 관련, 명예훼손 소송보다 사생활 침해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는 "유명인사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출판 금지명령을 얻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손상하는 이야기가 출판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Sweet and Maxwell은 기술발전으로 인한 web 2.0의 등장과 페이스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 등 손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뉴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학자들이 예측한 정도는 아니지만 명예훼손 사건이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Press Gazette 2009년 7월 27일자)

### “보도 가치 판단은 편집관리자가 결정할 사항”, 전직기자 ‘보도실현권’ 청구 기각

취재하여 집필한 기사가 게재되지 않아 기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전 아사히신문 기자 요시다케(吉竹幸則) 씨가 아사히신문사를 상대로 사죄 기사 게재와 위자료 3,000만 엔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나고야(名古屋)지법은 지난 4월 23일 “기사의 보도가치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의 여부는 회사의 편집방침에 비추어 경영, 편집관리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임은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법원이나 취재기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는 특정한 내용을 보도하도록 명령할 권리나 보도하게

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 청구 내용을 기각했다.

원고는 아사히신문 나고야 본사 사회부 기자로 재직 중 장량천(長良川) 하구언(河口堰)문제를 취재하면서 언(堰·독)은 치수효과가 없어 필요하지 않다는 기사를 집필했으나, 회사에 의해 게재가 거부되자 기자의 권리인 ‘보도실현권(報道實現權)’이 침해되었다며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이 권리에 의해 기자는 보도가치가 있는 일정수준의 원고 게재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도 합리

적인 이유가 없는 한 기자의 원고를 채택해야만 한다”며 “보도실현권은 헌법 19조, 21조, 27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기자와 신문사 간의 노동계약상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헌법의 각 조항을 기자와 신문사 간의 사인(私人)관계에 적용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시다케(吉竹幸則) 씨는 이 결정에 불복, 지난 5월 8일 항소했다.

(新聞協會報, 2009년 5월 12일자)

## 복싱 프로모터로서의 정직성을 크게 손상시킨 인터뷰기사 게재로 Herbie Hide, Frank Warren에게 35,000파운드 배상

복싱 프로모터인 Frank Warren이 TV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전 헤비급 월드 챔피언 Herbie Hide로부터 35,000파운드의 명예훼손 배상금을 받게 됐다.

Hide는 지난 2008년 7월 「Setanta Sports」와의 인터뷰 도중 Warren이 “사람들에게 타이틀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Warren은 이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Hide를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Patrick Moloney 판사는 “Warren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일이 없었음을 완전히 입증했다”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 사례라고 밝

혔다. 판사는 이와 함께 Warren이 향후 복서들이 자신에 대한 비방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금지명령도 받아들였다. Warren은 Hide의 인터뷰 기사 중 “부정직한 행위와 뇌물로 Johnny Nelson을 은퇴하도록 하여 그가 WBO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을 포기하게 했고, 이것을 통해 Warren이 내세운 Enzo MacCarinelli는 싸우지 않고 챔피언 벨트를 얻게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Warren의 변호사인 Richard Munden은 판사에게 “뇌물행사에 대한 발언은 한 사람의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해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더욱

이 이번 건은 그의 직업과 관련되어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Warren의 직업은 협상과 계약을 통해 복싱시합을 성사시키는 것인데 그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그의 공정함과 정직한 태도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Patrick Moloney 판사는 “Warren의 명성에 해를 끼친 것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며, “인터뷰의 내용은 그의 정직성에 반하는 매우 심각한 주장”이라고 판결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을 통해 Warren은 매우 큰 모욕을 당했으며 감정이 크게 상함은 물론, 큰 괴로움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Press Gazette 2009년 7월 27일자)

## 아일랜드, 명예훼손법 개혁 통해 과도한 손해배상 방지

아일랜드의 판사들은 다음 달 말부터 명예훼손 판결 이전에 배심원들이 예상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도록 해야 한다.

7월 중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이 개혁 법안은 고등법원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또 대법원이 배심원들이 판결한 배상액을 거부하고, 대법원이 직접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새로운 명예훼손법이 기존 명예훼손 배상제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명예훼손법 관련 회의는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새로운 법이 이번 회기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혁 법안은 판사들이 배심원들에게 사건에 대한 조언과 함께, 적절한 배상액과 관련된 방향을 조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개혁 법안은 「Evening Herald」와 PR

상담사 Monica Leech 사건에서 Dublin 고등법원 배심원들이 「Evening Herald」에게 명예훼손 배상액 중 역대 최고액인 187만 유로(150만 파운드)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다음 날에 발표된 것이다. 배심원들이 결정한 이 배상액은 최근 3년간 일어난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도 세 번째로 높은 액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Evening Herald」를 소유하고 있는 Independent Newspapers는 이 결정에 대해 곧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언론인 노동조합은 배심원들에 의해 결정된 배상액은 이 분야의 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배상액은 작년에 세워진 기록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로, 작년 최고액은 「Sunday World」가 1999년 9월 호의 한 기사에서 Martin McDonagh를 “마약왕 여행자”라고 묘사했다는 이유로 90만 유로를 배상한 것이었다.

2006년 11월에는 상고심에서 대법원 배심원들이 Mirror Group이 Denis O'Brien에게 75만 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예가 있으며, 이 사건은 1심 재판에서는 손해배상액이 31만 7343유로였으나, 상고심 판결에서 배심원들이 배상액을 터무니없이 높게 결정했던 사건이었다.

이번 명예훼손법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Reynolds defense」와 유사하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출판이 보장되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송이 가능한 기한도 6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켰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소송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일랜드 명예훼손법은 지난 7월 23일 채택되었으며,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편집자주

(Press Gazette 2009년 6월 26일자)

## 영국 고등법원, “재판 평의내용 공표는 법정모욕법 위반” Times에 벌금 명령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5월 13일 유아(乳兒) 상해치사사건의 재판에서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밝혔다는 이유로 기사를 게재한 「Times」와 당시 배심단장이었던 남성에게 대해 법정모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Times」에 대해 1만5,000파운드의 벌금과 원고인 법무장관 측의 재판비용 2만7,426파운드를 지불하도록 하고, 남성에게도 500파운드의 벌금을 명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된 재판은 유아의 신체를 과도하게 흔들어 뇌출혈 등을 발생시키는 ‘유아흔들기증후군’ 의해 유아를 사망하게 했다는 이유로 2007년 1월 잉글랜드지방 남동부의 버킹엄주에 거주하는 보육사 여성이 금고 3년의 실형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 재판의 배심단장과 배심원 중 한 사람은 동년 12월 「Times」 기사 등을 통해 판결의 오심을 시사하는 한편, 복수

의 의료전문가에 의한 증거의 유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배심단장은 또 2008년에는 「Times」에 기고를 통해 법원 내에서는 질문을 하기 어려웠으며, 배심단은 이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정모욕법 제8조는 배심원이 평의내용을 밝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재판 종료 후에도 평생 비밀을 지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배심단장은 2007년의 한 기사를 통해서 평의개시 직후에 10대2(유죄 10인, 무죄 2인)로 거의 합의가 되어있었다는 사실도 밝힌 바 있다.

이 판결에서 고등법원은 “「Times」의 기사는, 배심단이 평의 초기단계에서 총의(總意)를 굳히고, 이를 변경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전했다”며 “이는 평의내용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심단장은 또 기사에서 “배심원들이 ‘상식’에 따라 ‘보통의 남성, 여성으로

서 판결했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배심원은 재판에 제출된 증거·증언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 점에 대한 경시도 법정모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Times」는 유럽인권조약 제10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방패로 보도기관의 권리를 주장했다. 고등법원은 「Times」가 기사 게재 전에 법률상의 조언을 받고 보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나, 결정적인 근거가 된 의료전문가에 의한 증거의 취급에 있어 배심단장이 진지하게 대처했음을 참작하더라도, ‘배심실의 비밀’을 폭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고등법원은 “배심실 내의 의견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만 배심원은 자신을 가지고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新聞協會報, 2009년 6월 9일자)

## “구치소의 구독지 제한은 위법”, 그러나 소장은 과실 없어

일본 오사카(大阪)구치소에 수감된 한 남성이 구치소가 신문을 2개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제한해 희망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22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오사카고법원은 지난 6월 11일 “신문을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여 구치소 내의 규율이 흐트러진다고 할 수는 없다”며 “구독 규제는 헌법에 보장된 신문을 읽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독 규제는 오랫동안

안 실무상 특별한 의심 없이 계속해왔던 일로 구치소 소장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시, 1심과 같이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5개월간 구치되었던 이 남성은 그 동안 아사히(朝日)신문의 구독을 희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구치소 내의 설문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요미우리(讀賣)신문과 산케이(産經)신문 중에서 구독지를 선택하도록 규제를 받았다.

정부는 “보도의 범위나 방법이 다르기는 하나 신문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문 각지

는 다양한 입장에서 제작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성을 정부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가 보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2007년 9월 28일 오사카지법의 1심 판결은 신문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면 구치소의 사무량이 늘어나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구독 규제를 인정했다.

(新聞協會報, 2009년 6월 30일자)

### 삿뿌로지법, “날조된 기사에 진실상당성 인정될 수 없다”

일본 북해도경찰에서 2003년 발각한 부정경리문제를 다룬 서적의 내용이 날조되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도경총무부장 사사끼(佐佐木友善) 씨가 북해도신문사와 신문사의 기자 2명, 서적을 출판한 旬報社와 講談社를 상대로 총 6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삿뿌로지법(札幌)지법은 지난 4월 20일 잘못된 내용이라 주장된 기술 4곳 중 3곳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 피고 측에 총 72만 엔의 지급을 명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북해도신문 기자들이 집필한 ‘경찰간부를 체포하라! 진홍

수령의 비자금 만들기’(旬報社)와 ‘추궁 · 북해도경 『비자금』의혹’(講談社)의 일부이다.

재판부는 서적 내용 중 총무부장이 본부장으로부터 ‘어쩌면 이런 서투른 짓을 했느냐’고 질책을 받은 모양이라는 기술이 사사끼 씨가 도경의 부정경리를 조사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한 인상을 독자에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질책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사사끼 씨 본인과 도경의 간부 직원 전원이 부정하고 있는데, 약 20명으로부터 입증을 받았다는 기사들의 주장은 다소 부자연스러우며, 원고의

진술을 뒤집을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사죄광고의 게재와 서적의 회수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記述)은 서적의 주요부분이 아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서적을 함께 저술한 오오다니(大谷昭宏) 씨와 작가인 미야자키(宮崎學) 씨가 출판물을 날조라고 한 사사끼 씨의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은 이날 판결에서 기각되었다.

(新聞協會報, 2009년 5월 12일자)

### Guardian, 남아프리카 대통령 Jacob Zuma을 강간범으로 보도 후 정정기사를 게재하고 사과했으나 손해배상금 지급

- 원고 측, “정정기사가 최초 게재된 기사에 비해 현저히 작고, 온라인에는 게재조차 되지 않았다”며 소송 지속-

남아프리카 대통령인 Jacob Zuma가 자신을 강간범이라고 주장했던 「Guardian」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상당한 액수의 명예훼손 보상금을 받게 됐다.

Zuma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발행된 신문에 실린 글 중 Simon Jenkins가 쓴 ‘부패와 혼돈에 익숙해진 남아프리카’라는 제목의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변호사인 Jenny Afia는 법정에서 그 기사는 Zuma 대통령을 강간범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으며, 무기거래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근거 없는 주장들이 보도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며, 그 내용 또한 완전히 거짓이다”라고 주장했다.

「Guardian」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던 4월에 정정기사와 사과문을 칼럼으로 내보낸 바 있으나, Zuma 대통령 측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

정정기사는 “우리는 남아프리카의 대통령 Jacob Zuma를 강간범이라고 보도한 것과 그가 뇌물수수 등의 부패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며, 이것은 편집상의 실수였고 Zuma 대통령은 2006년도에 강간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신문은 기사 내용이

Zuma 대통령에 대한 남아프리카 검찰청의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정치적인 동기로 쓰여진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기사로 인해 그가 받았을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 당혹스러움 등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Afia 변호사는 정정기사가 최초에 게재된 기사에 비해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작게 나왔고, 온라인 기사에는 게재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해 법적대응을 계속 진행했으며, 이번 배상판결로 인해 Zuma 대통령은 그의 명성이 회복될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Press Gazette 2009년 7월 30일자)